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9,558,238	9,286,747
일반회계	294,799,772	8,843,993
특별회계	14,758,466	442,754
기타특별회계	14,758,466	442,75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455,324	313,660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351,336	10,54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267,900	8,037
의료보호비특별회계	1,360,432	40,813
복지기금특별회계	254,000	7,620
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117,000	3,51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952,474	58,574

제 2 조 세입 세출의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82,19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843,99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